

배움과 감동으로 가득 찬 정왕교육

정왕초등학교 학교학칙



2020

정왕초등학교

정왕초등학교 학교 규칙

*검정색: 2019 학교학칙 내용
빨간색: 삭제할 내용
파란색: 변경 또는 삽입할 내용

제정	1999. 03. 17.
제1차 개정	1999. 04. 24.
제2차 개정	2000. 03. 16.
제3차 개정	2001. 04. 24.
제4차 개정	2003. 05. 20.
제5차 개정	2004. 04. 28.
제6차 개정	2006. 04. 13.
제7차 개정	2007. 04. 13.
제8차 개정	2009. 04. 08.
제9차 개정	2011. 03. 11.
제10차 개정	2011. 10. 01.
제11차 개정	2012. 12. 01.
제12차 개정	2013. 09. 30.
제13차 개정	2016. 04. 15.
제14차 개정	2017. 10. 20.
제15차 개정	2018. 06. 1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정왕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 ②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우리 학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2장 명칭 및 위치

제3조 (명칭)

우리 학교는 정왕초등학교라 한다.

제4조 (위치)

우리 학교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중심상가로 257번지에 둔다.

제3장 수업연한 · 학년제 · 학기 및 휴업일

제5조 (수업연한)

우리 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6조 (학년제)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7조 (학기)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 (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5월 6일**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5. **학년말 방학**
6.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무일**
7. 학교장 재량휴업일
8. 봄, 가을 단기방학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3호, 제4호, 제5호, 제8호의 방학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시흥교육지원청에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4장 학급편성 및 학생정원

제9조 (학급수 등)

본교의 학급수 및 학생정원은 당해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1/3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5장 교육과정 · 수업일수 · 평가 · 과정수료 · 졸업

제10조 (교육과정 편성·운영)

- ① 학교·학년·학급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교육감이 제시한 경기도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및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의 강조점을 반영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편성한다.
- ② 학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한다.

제11조 (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 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⑤ 학생의 흥미, 특성과 계절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8조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거 학교 간 교류학습 및 가족동반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⑥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20일 이내의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국내·외 구분 없이 연간 20일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나,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한 초과 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⑦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1달간의 학교(도·농)간 교류학습(위탁교육)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교류 및 위탁교육 수용교는 교류 및 위탁 기간 중에 본인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 ⑧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출결처리)

-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전염병 등
 2.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3. 현장체험학습 및 교류학습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일: 연간 20일 이내, 교환(위탁)학습: 연간 1개월 이내)
 4.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함)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6.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현장체험학습)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① 학교 또는 학년 단위의 현장체험학습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학교 또는 학년 단위 현장체험학습은 장소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2.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소규모 주제별 체험학습을 운영한다.
 3.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비상 연락체제를 가동한다.
 4.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체험학습은 지양한다.
(동학년 국내·외 분리 체험학습, 과다경비 부담 등)
 5. 국내 체험학습을 통해 달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 체험학습을 지양한다.
- ② 본교의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학부모와 동반한 고적답사 및 문화탐방 여행 등 가족여행
 2. 가족 친지의 경조사 참여(관·혼·상·제 등)
 3. 친·인척 방문
 4. 견학활동
 5. 각종 체험 활동
 6. 기타 등
- ③ 학교장 허가 현장 체험학습을 통하여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경우, 학교를 출석하지 않더라도 학교출석으로 처리한다. 이 때 체험학습 실시 2일전까지 현장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체험학습이 끝난 후 5일 이내에 사후 학습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단, 기간은 연간 20일 이하로 제한한다.
- ④ '학교장 허가 현장 체험학습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한 경우 '**무단결석(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허가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기타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학교장 내부 결재 필요)
- ⑤ 학교장(전결규정 포함)의 결재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담임교사는 허가여부, 출석인정 일수 등을 체험학습 전에 보호자에게 서면(또는 문자) 통보한 후 체험학습을 실시하도록 안내한다.
- ⑥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상업적인 내용의 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⑦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해당 학년도(5년간)** 보관한다.
- ⑧ **무단결석(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되는 다음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으로 처리 할 수 없다.
1.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되어 피의자 조사, 유치장, 구치소 등에 수감되어 결석한 경우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3.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예) 학원수강으로 인한 결석, 교외 체험학습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학업중단 숙려 기간 동안 자필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등

제14조 (수업일수)

-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

지역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

제15조 (평가)

- ① 평가 내용과 방법, 시기 등에 대한 평가 계획은 학기초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② 평가 원안(시험지 원안)은 학교 기록물 관리 지침에 의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 ③ 우리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6조 (과정수료의 인정)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과정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 ②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2/3이상으로 한다.

제17조 (졸업)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입학 · 전학 · 취학의무의 면제

제18조 (입학자격)

- 우리 학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우리 학교 학구 내 아동으로서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자
 -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외국민의 자녀

제19조 (입학시기 및 조기입학)

- ①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② 학생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 ③ 조기입학을 원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2008.05.27.공포)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을 신청해야 한다.

제20조 (취학유예 및 휴학)

- ①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개정(2008.05.27.공포)에 따라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에게 입학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 ② 학교장의 취학예정자로 통보 받은 아동이 취학하지 아니할 경우 동장에게 통보하고 시흥교육지원청에 보고하며 가정방문 및 보호자 면담 요청, 의무교육관리

위원회 개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면담에 불응하거나 소재 및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여야 한다.

제21조 (출석 독촉·경고 및 통보)

- ①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결석 학생 및 보호자에게 유선연락을 실시하여 출석을 독려하고, 소재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상 결석한 학생 또는 2회 이상 출석 독려를 하였으나 결석상태가 계속되는 학생의 경우 장기결석 학생 현황, 가정 방문, 내교 요청 및 면담 등의 조치 내용을 시흥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 ① 우리 학교의 취학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를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의 결정에 관한 심의
 2. 미취학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3.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③ 위원회의 구성은 교장을 위원장으로, 교감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내부 위원으로 교무부장, 1학년 학년부장(보건교사) 2인을 두며, 외부위원으로는 지역관할 학교 폭력 전담경찰관 1인, 학부모 2인(지역인사도 가능)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 ⑤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 ⑥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며 그 결과를 동장과 시흥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이 규정 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23조 (전·입학)

- ①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은 매년 동의 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을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원본과 전산자료를 송부 요청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④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 ⑤ 학교장은 전학절차를 마친 아동 또는 학생 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기일 수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우리 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거류 신고증을 제출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 ⑦ 탈북자 또는 불법 체류자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동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현 거주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전세계약서를 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 (유예자의 학적 처리)

-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학교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1/3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②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학생은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한다.
-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 (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전입학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전·편입학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재입학·편입학)

- ① 학교의 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를 얻어 입학 또는 편입을 허락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8조 (목적)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 및 조기 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2013.01.25)에 따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 (방침)

- ①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학부모와 교원 대상으로 조기진급 등에 관해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③ 조기진급 등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 ④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⑤ 조기진급자 또는 조기졸업자의 개별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의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제30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조기진급할 수 있다.
- ②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5학년 과정 이수 후 조기졸업할 수 있다.

제31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제12조의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5학년에서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할 수 있다.

제32조 (선정시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4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33조 (선정대상자 기준)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며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①~③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①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 ②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③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34조 (선정절차)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 ①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 추천
- ② 제33조(선정대상자 기준)의 기준 고려
- ③ 교무회의 사정
- ④ 학교장 선정

제35조 (학습방법)

학습방법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이수 해당 학년 교과목 담당 교사들의 지도 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 (학습지원)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제37조 (평가시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 진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38조 (이수교과목)

- ① 조기진급 대상자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진급 대상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②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제39조 (이수기준)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 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만점의 80%를 넘어야 한다.

제40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과목 이수는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제41조 (환원조치)

- ① 조기진급자가 진급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환원 조치 대상자는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42조 (신청시기)

제28조(선정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43조 (선정대상자 기준)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①, ②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①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 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44조 (상급학교 전형 응시 자격 평가)

- ① 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 후 7일 이내에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 ②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③ 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6학년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 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80%이어야 한다.
- ④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 ⑤ 상급학교 전형 응시 자격 평가에 통과되었으나 해당 학교 전형에서 불합격하여 타학교 전형을 위해 자격 평가가 필요하고, 해당 학기에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기실시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45조 (상급학교 전형 응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46조 (조기졸업 인정)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한다.

제47조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구.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③ 교사는 교무부장, 조기졸업 업무담당부장, 평가 해당 과목 교사 등을 포함한다.

제48조 (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 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49조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 ①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적(除斥)된다.
- ②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회에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①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0조 (업무)

-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 ②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 ③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 ④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 ⑤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51조 (조기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 처리)

- ① 조기진급 등 대상자가 속한 학급의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리, 성적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조기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 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이 규정 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따로 결정한다.

제8장 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제52조 (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방과후교육활동비, 청소년단체활동비, 돌봄교실급간식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제9장 학생 포상 · 생활규범 · 학생선도

제53조 (학교생활규정)

- ① 학교생활규정을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 ③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4조 (학생 포상)

-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한 자, 학업이 우수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균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55조 (훈육·훈계방법)

우리 학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 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56조 (학생 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의 기간에는 교육장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제1항 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⑤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왕생활인권규정에 따른다.

제10장 학생자치회 · 학부모회 조직 및 운영

제57조 (학생자치활동)

① 우리 학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왕초등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타 '학생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제정·운영 한다.

제58조 (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우리 학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9조 (학부모회 조직·운영)

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 바지하기 위하여 정왕초등학교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부모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11장 양성평등, 성희롱 · 성폭력 예방

제60조 (양성평등,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내에서는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교직원 상호간에 성희롱·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절을 지킨다.

① 남녀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②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아동의 성보호의식 향상 및 아동 성범죄를 예방한다.

④ 성과 관련된 문제(성희롱·성폭력)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통보하고 회의를 개최하여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의 조치를 심의·결정한다.

제12장 학교규칙 개정 절차

제61조 (학칙개정 절차)

①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법, 조례, 지침 등)의 범위에서 학교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④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학칙은 2018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